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고 제2026-204호

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

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8. 7.

안산고용노동지청



- 1. 건 명: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
- 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,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및 동법 제48조제2항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공시송달 내용
주식회사흥익솔루션	110111-7*****	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6	신OO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

- 4. 공고기간: 2026. 8. 7. ~ 2026. 8. 21.(15일간)
- 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1과(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.0503-8803-0333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노동기준조사1과 근로감독관 송은영(Tel. 031-412-190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